

■ 최신 법령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기준 신설

1. 주요 내용

산재보험 미신고 또는 산재보험료 미납 기간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만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 다운로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6. 3. 28.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추가

1.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신경정신계 질병의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고역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가 추가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6. 3. 28. 시행\)](#)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변경

1. 주요 내용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중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밖에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2.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6. 2. 17. 시행\)](#)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의무의 면제

1.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용 로봇을 이용하는 사업주에게 안전매트 및 높이 1.8미터 이상 방책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그 로봇에 대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16. 4. 7. 시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

1.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조정(별표3 및 별표4)

현행 개별 근로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은 사업주에게 일정기간의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만 벌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시정기간을 단축하거나 시정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인지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 신고사건의 내사종결 요건 완화

현행 규정은 범죄인지 전 신고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내사종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율 해결이 되지 않은 신고인이 다시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이 서면으로 신고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 신고사건을 내사종결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신고를 철회한 근로자가 다시 신고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일부개정령\(2016. 7. 1. 시행\)](#)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개정

1. 주요 내용

도급사업에서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에 대하여 정기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다운로드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산업안전보건\) 일부개정안\(2016. 3. 30. 시행\)](#)